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중 규정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32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중 규정	2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0. 13.
3. 회 부 일 : 2025.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관할 학교의 교사 비율은 전체 위원의 6.8%이고, 교사가 없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존재함.

이에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되고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며 학교교육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Ⅲ. 검토의견

1.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중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권고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u><신설></u>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u>구성 및 운영</u> ----- -----.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¹⁾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함.

또한 교권보호위원회(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의미, 이하 같음)는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심의 과정에서 교원의 입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교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교권보호위원회 개요]

근거	구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지위법 제18조	설치	· 시·도 교육청	· 교육지원청
	목적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심의 사항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원 지위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5조	위원 수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
	위원 자격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 - 해당 시·도 의회 의원 -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교원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됨 -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함(「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구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학생 생활지도 경력 15년 이상 교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교육 활동 관련 전문가 -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 경험 있는 학부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해당 시·도 관할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관할 학교 교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교육 활동 관련 전문가 -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러한 근거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2025년 10월 기준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교원 위원 중 교장·교감은 위원 구성에서 가장 많은 비중(시·도교권보호위원회 15.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23.3%)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10.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9.5% 수준으로 나타남.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시·도 의회의원	교육청 국장	교원		교수 등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경찰	기타	합계
			교사	교장·교감						
시·도 교권보호 위원회	15 (6.9)	29 (13.3)	23 (10.6)	34 (15.6)	15 (6.9)	34 (15.6)	25 (11.5)	13 (6.0)	30 (13.8)	218 (100.0)
지역 교권보호 위원회	-	-	379 (9.5)	935 (23.3)	155 (3.9)	917 (22.9)	398 (9.9)	425 (10.6)	798 (19.9)	4,007 (100.0)

주: 1. 2025.10. 기준

2.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으로 각각 구성

자료: 교육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인 교원 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경우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교사의 입장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교사가 위원회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교육활동 보호가 현장에 기반하여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현행법령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교원지위법」에서 위원회의 설치, 목적,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인원 수, 자격, 임기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 소집 사유, 정족수 등을 규정함.

이러한 현행법령 체계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개정안의 내용은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게 보이나, 개정안과 같이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의 비율을 「교원지위법」에 규정할 경우 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의 참여 보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임.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시,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소속 학생의 학부모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점²⁾ 등을 고려할 때,

2) 「학교폭력예방법」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시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 포함하도록 권고하여 심의과정에서 교사의 입장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규정된 교원 위원의 자격 및 비중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하는 위원을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교사’는 「유아교육법」상 원장·원감이 아닌 교원, 「초·중등교육법」상 교장·교감이 아닌 교원으로³⁾,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교사로 규정된 것은, 실제 수업 등을 담당하는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상황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기타 내용 생략)

3)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므로 현행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원 위원의 자격(시·도교육보호위원회: 학생 생활지도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 지역교육보호위원: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교원)을 갖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는 교사 위원에 대한 자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원 위원의 자격이 개정안의 교사 위원에게 적용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에서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시·도교육보호위원회와 지역교육보호위원회에 적용되는데,

현행 「교원지위법 시행령」은 지역교육보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교원 위원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교원지위법」에서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교원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는데,

유사한 범주의 위원 수가 「교원지위법」과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되어 내용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로, 관할 학교 교사 위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 위원의 수에 대한 내용을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비중 규정 조항 내용]

[현행법 시행령] 교원 위원 (1/2 이하) ← [개정안] 관할 학교 교사 위원 (1/3 이상) ⇒	[현행법 시행령] 그 외 위원
---	-------------------------

주: 교사 포함 교원 위원의 범위 중, 음영은 현행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세로줄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임

□ 아울러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352호)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중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시 교사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① 김문수의원안은 그 범위를 ‘관할 학교’의 교사로 한정하고 비중을 ‘10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는 반면, 백승아의원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교사인 위원을 ‘10분의 2 이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비중으로 교사 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김문수의원안은 교육감·교육장이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반면, 백승아의원안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차이가 있음.

② 그 외에 대통령령 위임 사항으로, 백승아의원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항을 유지하고 있으나, 김문수의원안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③ 부칙에서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직위와 잔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두 개정안 모두 동일하게 규정함.

두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시 교사 위원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범위, 비중, 준수 의무 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단일한 기준 마련을 위해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중 규정 관련 법률 개정안]

구분		김문수의원안(제2213532호)	백승아의원안(제2212352호)
① 위원 수 규정		- 교육감·교육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시, - <u>관할 학교의</u> 교사인 위원이 - 전체 위원 정수의 <u>10분의 3 이상</u>이 되도록 - <u>노력</u>하여야 함(권고)	- 교육감·교육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시, - <u>교사인</u> 위원이 - 전체 위원 정수의 <u>10분의 2 이상</u>이 되도록 - <u>하여야 함</u>(의무)
	② 위임	교권보호위원회의 <u>설치·구성</u>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교권보호위원회의 <u>설치·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현행과 동일)
③ 부칙	시행 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위원직 <u>유지</u>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위원직 <u>유지</u>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현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평교사 비율은 9% 수준으로, 교사 비율을 상향하여 교육활동 침해의 직접적 피해자인 교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교사 비율을 10분의 3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심의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우려되므로, 교사, 교장·교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의 균형 있는 구성을 통해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위원의 비율을 10분의2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개정안	수정안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u>10분의 3이상</u> 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u>10분의 2이상</u> 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개정안은 관할 소속 교사로 한정되어 제척·기피 사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심의의 공정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음. 또한 교사 비율 상향이 교권보호 강화로 직접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형식적 구성 요건 강화에 불과함. 위원회는 이미 교원 위원을 50%이하로 구성하도록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교원 구성에 관해 이중으로 규제하는 구조가 되고, 운영 탄력성을 떨어뜨림. 교원 내부에서도 관리자와 평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균형 있는 심의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 1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중 규정 개정안 원문

현행	김문수의원안(제2213532호)	백승아의원안(제2212352호)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u>관할 학교의 교사인</u>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u>교사인</u>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_____ _____ <u>구성 및 운영</u> _____ _____.	④ (현행 제3항과 같음)